

# 해외사업에서의 법규위반행위 금지 및 부패행위 방지 지침

[문서번호: I-PL-108] [개정번호: 3] [개정일자: 2021-01-04]

## 목차

- 1.0 목 적
- 2.0 관련 법규의 준수
- 3.0 해외 부패방지를 위한 구체적 지침
- 4.0 보고 및 조사
- 5.0 서류유지 및 업무제외 조치
- 6.0 조사평가 및 재발 방지
- 7.0 Confirmation of Compliance

### 1.0 목 적

본 지침은 임직원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 단독으로 혹은 다른 회사의 임직원 및 비즈니스 파트너[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회사와 컨소시움 (Consortium) 계약, 합작 (Joint Venture) 계약, 경영자문 (Consultancy) 혹은 대리 위임 (Agency) 계약, 하도급계약 (Subcontract) 등의 기타 업무협력 (Business Cooperation)에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거나 회사에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여 회사와 업무협력 관계에 있는 개인 혹은 법인과 그 임직원, 자회사 등을 의미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음. 이하 "비즈니스파트너"]를 통해 해외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를 규율 하기 위한 것이다.

### 2.0 관련 법규의 준수

2.1 임직원은 회사의 윤리경영 기준을 따르고,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된 각 국가 및 지역의 법규, 규제, 정책, 합리적인 상관습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2 임직원은 회사가 사업을 수행하는 각 국가에서 당해 국가의 경쟁법, 반독점법률 및 경쟁원칙 등을 준수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통해 해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경영정책으로 하고 있으므로, 임직원은 사업을 수행하는 각국의 관련 법규를 이해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2.3 회사의 이러한 경영정책은 회사의 해외 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비즈니스파트너에게도 설명되어야 하며,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한 함께 준수되어야 한다. 따라서 임직원은 회사의 이러한 정책이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4 임직원은 해외 사업과 관련하여, 회사에 지급되거나 회사를 대신해 발생한 모든 대금지급, 비용, 채무 등을 회사의 회계 및 장부 기재 절차에 따라 반드시 정확하고 적절하게 기록하고 기술하며, 위 지급, 비용, 채무는 반드시 증빙문서 및 증거자료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

### 3.0 해외 부패방지를 위한 구체적 지침

3.1 임직원은 외국 기업과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국내의 형법 및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FBPA), 미국의 부패방지법 (U.S.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 OECD 뇌물방지협약 등을 포함한 국내외 해외부패방지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현지의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1) 외국공무원 등이 속한 국가의 법령에 의하여 그 지급이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경우
- 2) 일상적·반복적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공무원 등에게 동인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촉진할 목적으로 소액의 금전 기타 이익을 약속·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3.2 임직원 및 비즈니스파트너는 부정하게 사업을 취득 혹은 유지하거나 부적절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 국가기관이나 공무원 혹은 기타 관련자(이하 "외국 공무원 등")에게 뇌물 등을 직접 혹은 간접으로 제공하거나, 약속하거나, 만들거나, 그러한 행위들을 승인하지 아니한다.

3.3 임직원 및 비즈니스파트너는 합리적인 사람이 추론하기에 회사가 외국 국가기관이나 외국 공무원 등에게 부적절한 금품을 제공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떠한 행위에도 관여하지 않는다.

3.4 임직원은 회사와 관련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해외에서 비즈니스 파트너와 컨소시엄 (Consortium) 계약, 합작 (Joint Venture) 계약, 경영자문 (Consultancy) 혹은 대리위임 (Agency) 계약이나 기타 하도급 계약 (Subcontract) 등의 업무협력 (Business Cooperation)에 관련된 계약(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이하 "업무협력 계약 등")을 체결하거나 업무협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즈니스 파트너로부터 별첨(Confirmation of Compliance)을 이용하여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이행 및 조치하여야 한다.

3.4.1 반독점법규 및 경쟁관련 법규 등을 포함하는 현지국의 제반 법규 및 미국 FCPA 등 외국의 기업활동에 법률상·사실상 관할권이 미치거나 관할권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의 부패방지관련 법규(이하 "관련 법규")를 확인·숙지하고 준수한다.

3.4.2 관련 외국 공무원 등에게 일체의 불법적인 이익이나 편익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3.4.3 관련 법규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 관련 당사국의 공무원 혹은 민간인과의 접촉이나 정보교류가 있는 경우 즉시 그 상세한 경위를 상급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3.4.4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그 사유를 설명하고 관련 업무에 대해 증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임직원은 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3.5 회사는 위 3.4.4 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가 없는 한, 임직원이 회사 관련 업무를 관련 법규에 적법하게 수행하였다고 신뢰한다.

#### 4.0 보고 및 조사

4.1 임직원은 자신 혹은 회사의 다른 임직원 혹은 비즈니스파트너가 상기 3.1 항에 위반되거나 위반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상급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4.2 상급자는 위 보고를 받는 경우, 독립된 경영진이 지휘하는 내부조사팀을 구성하여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관련 법규위반 여부를 조사 한다.

4.3 내부조사팀은 위 조사결과를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4.4 내부조사팀 조사 결과, 관련 법규에 대한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상급자는 그 사유를 입증하여 업무협력계약 내지는 업무협력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 5.0 서류유지 및 업무제외 조치

위 조사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진행을 위하여 내부조사팀은 즉시 관련 서류에 대한 유지공고 (Document Retention Notice) 를 할 수 있으며, 관련 임직원을 조사대상 업무에서 제외시키는 조치 (Isolation Order) 를 취할 수 있다.

#### 6.0 조사평가 및 재발방지

회사는 조사결과를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재발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 해야 한다.

별첨 : Confirmation of Compliance

[Name and Address ]

Date : .....

**Subject : Confirmation of Compliance**

Dear Madam/Sir,

DL E&C Co., Ltd. ("DL E&C"), in doing its business at home and abroad, is to abide by the rules and regulations and compete with others in a fair way and manner, thereby building a mutually reliable and cooperative business relationship for the mutual benefits and development.

[ ] acknowledges and agrees that it is the policy of DL E&C to comply with all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all jurisdictions in which it does business, and [ ] warrants and represents that it has not, in relation to .....("Project"), taken any action, or will not take any action, which would constitute a violation, or implicate DL E&C in a violation of any law of jurisdiction in which it performs services, or under which it is organized,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the Republic of Korea's Foreign Bribery Prevention Act of 1999 ("FBPA"), the United States of America's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of 1977, as amended("FCPA") and where applicable, legislation enacted by member States and signatories implementing the OECD Conventi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The FBPA prohibits every Korean company and its employees and representatives or agents from giving, paying, promising, offering, or authorizing the payment, directly or indirectly through a third party, of anything of value to any "foreign public official" to persuade that official to help the company, or any other person, obtain or retain business or to secure some other improper advantage.

[ ] shall immediately notify DL E&C of any violation or potential violation of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nd be responsible for any damages caused to DL E&C from such violation of [ ] or its agents and partners in relation to the Project.

For and On behalf of

[ ]

Name and Signature